KOSHA GUID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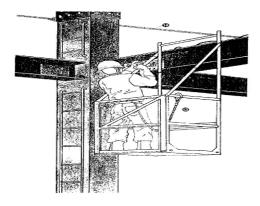
C - 44 - 2015

- (다) 데크 플레이트 중심부에 철근다발, 콘크리트 등 과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.
- (라) 데크 플레이트 설치 시에는 가능한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1 m 간격 또는 한 장당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.
- (마) 데크 플레이트와 기둥과의 접속부는 처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에 앵글 등으로 하부를 보강하여야 한다. 특히, 기둥이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데크 플레이트의 슬래브 단부 및 바닥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조기에 설치하여야 하며, 덮개 설치가 어려운 대형 바닥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

7. 철골공사용 가설설비

7.1 비계

- (1) 달비계 등 전면에 걸쳐 설치하는 전면비계는 추락 방지용 방망을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달기틀 및 달비계용 달기체인은 위험기계·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- (3) 달대비계는 가급적 안전성이 확보된 기성제품을 사용하고, 현장에서 제작하는 경우 안전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, 사용재료는 변형, 부식, 손상이 없어야 한다.



<그림 12> 달대비계 설치